#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익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012

발의연월일: 2020. 12. 29.

발 의 자 : 홍익표·기동민·김원이

민형배 · 박홍근 · 이규민

임종성 · 임호선 · 한준호

홍성국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청이 특허·허가 등 상대방에게 권리·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행정행위의 법률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수 존재함.

이는 상황의 특성에 따라 보다 적합한 탄력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으며, 허가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통해 사업자의 허가조건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.

이에 현행법상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 주변환경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, 그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상황에 부합하는 유연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23조제9항 및 제36조제2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#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(이하 "허가조건"이라한다)을 붙일 수 있다. 이 경우 허가조건은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,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는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.

제3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제23조제9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허가조건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	제23조(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
신고) ① ~ ⑧ (생 략)	신고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⑨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
	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
	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
	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
	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
	건(이하 "허가조건"이라 한다)
	을 붙일 수 있다. 이 경우 허가
	조건은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
	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
	이어야 하며, 허가 또는 변경허
	가를 받는 자에게 부당한 의무
	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
	 된다.
제36조(허가의 취소 등) 환경부장	제36조(허가의 취소 등)
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사업자가	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	
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	
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	
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	

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·제2 호·제10호·제11호 또는 제18호 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 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 1.・2.(생 략) <신 설>

3. ~ 20. (생략)

,
1.•2. (현행과 같음)
2의2. 제23조제9항에 따른 허가
조건을 위반한 경우
3. ~ 20. (현행과 같음)